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서 울 고 등 법 원

춘천제2행정부

판 결

사 건 ([redacted])2020누4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시장

제1심판결 [redacted]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구합52308 판결

변론종결 2021. 1. 11.

판결선고 2021. 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4,159,080원, 지방교육세 5,559,050원, 농어촌특별세 2,784,01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당사자의 주장 및 3. 관계 규정의 표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9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피고에게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정관이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법인등기부에는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다. 원고가 최초로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상 영위한 시기는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추가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16. 12.경이므로 이 때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추징처분은 세액을 면제받은 자가 당초의 면제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처분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징처분이 법상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고,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법한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할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1677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취득세 등을 감면할 사유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른 추징처분을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을 제2호증의2 취득세 조사서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가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쟁점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른 '처분(임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그 쟁점이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른 추징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전환시 그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는 점에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정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의 '임대'는 '처분' 개념의 일종으로 포섭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문언적 해석 및 앞서 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에서 말하는 '임대'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이후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무관하게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것을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의 추징 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2013. 10. 11. H에게 임대료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10.부터 2018. 10. 1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9. 4.경 갱신되면서 임대료가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것을 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한 것이 아닌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에 준하여 '임대'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2016. 10. 6. 설립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취득세 신고일(2016. 11. 18.)이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2016. 12. 2) 당시까지 정관이나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2016. 12. 12.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추가하고 같은 달 15. 그와 같은 추가사항을 법인등기부에 경료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인정되는 점(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란 기재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기재된 2016. 12. 15.부터는 원고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와 B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D 사이에 경영주체, 자산, 주된 사업의 내용 등의 연속성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9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본문의 감면요건에 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추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